

식품안심업소 관련 질의·응답집(Q&A)

CONTENTS

1 제도·기준

- Q1. 식품안심업소 정의? 1
- Q2.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? 1
- Q3. 식품안심업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? 1
- Q4. 기존 ' 좋음'(★) 지정업소 또한 별 5개가 적용되나요? 1
- Q5. 표지판은 어떻게 바뀌나요? 2
- Q6. 농림축산식품부의 '안심식당'과는 무엇이 다른가요? 3
- Q7. '식품안심구역'은 무엇인가요? 3
- Q8.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? 3
- Q9.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경우 출입·수거·검사가 완전히 면제되는가요? 3
- Q10.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? 4
- Q11.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경우,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? 4

2 영업자 혜택

- Q12. 식품안심업소의 표지판이 변경되었는데, 기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곳은 표지판을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해주는가요? 5
- Q13. 표지판은 재발급하거나 자체 제작이 가능한가요? 5
- Q14. 포장용기 등에 식품안심업소 표시할 수 있나요? 5
- Q15.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? 6
- Q16. 배달 앱에 식품안심업소 등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 6

식품안심업소 관련 질의·응답집(Q&A)

3 신청·평가

- Q17.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방법은? 7
- Q18. 평가 방법과 평가표 확인 방법은? 7
- Q19. 간편조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나요? 7
- Q20.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? 8
- Q21. 신청 후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? 8
- Q22. 평가 전 업소 정보 변경이 가능한가요? 9
- Q23. 지정사항변경은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? 9
- Q24.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기 전에 미리 컨설팅을 받아볼 수도 있나요? 9

4 집단급식소·위탁급식소

- Q25.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심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10

1. 제도·기준

Q1 식품안전심업소 정의?

- ☑ '식품안전심업소'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하며, 음식점 위생등급이 단일화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.
(기존)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→ (변경) 식품안전심업소

Q2 식품안전심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?

- ☑ 휴게음식점 영업자, 일반음식점 영업자, 제과점 영업자입니다. 다만, 집단급식소(위탁급식영업)는 '26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시범사업 종료 후, 올해 6월부터 집단급식소(위탁급식영업)도 식품안전심업소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3 식품안전심업소 지정은 어떻게 평가하나요?

- ☑ 식품안전심업소는 기본·일반·공통 3개 분야에서 총 47개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며, 85점 이상인 경우, 식품안전심업소로 지정됩니다.
(기존) 90점 이상: 매우우수, 85점 이상: 우수, 80점 이상: 좋음
(개정) 85점 이상: 식품안전심업소 (단일등급)

Q4 기존 '좋음'(★) 지정업소 또한 별 5개가 적용되나요?

- ☑ 기존 위생등급을 받은 모든 업소는 등급에 상관없이 별 5개로 전환됩니다.

Q5 표지판은 어떻게 바뀌나요?

- ☑ 기존 매우우수(별3개), 우수(별2개), 좋음(별1개) 등급에서 단일 등급(별5개)으로 표지판이 변경되었습니다.

(기존) 표지판



(변경) 표지판



Q6 농림축산식품부의 '안심식당'과는 무엇이 다른가요?

- ☑ '안심식당'은 덜어먹는 도구 비치, 위생적 수저관리,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지정합니다.
식약처에서 지정하는 '식품안심업소'는 총 3개 분야에서 총 47개 항목을 평가하는 '위생수준 종합진단 결과'입니다.

Q7 '식품안심구역'은 무엇인가요?

- ☑ '식품안심구역'이란 특정 구역(지역, 장소, 건물을 포함) 안에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 모여 있으며, 그 중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의 비율이 2/3 이상인 구역으로 식약처, 지자체 등이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.
※ '26.3월 현재 식품안심구역: 전국 85개소

Q8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☑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식품안심업소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식품안심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Q9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경우 출입·수거·검사가 완전히 면제되는가요?

- ☑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 제8항에 따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은 경우, 출입·수거·검사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지정 여부 확인 후 가급적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, 필요 시(민원 발생, 위반신고)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10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?

- ☑ **음식점의 위생·청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.**
얼마나 위생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정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고, 이는 표지판, 배달앱 등에 표시·광고함으로써 **위생적이고 깨끗한 곳을 안내할 수 있고**, 소비자는 **위생적인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**를 얻게 됩니다.

Q11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경우,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?

- ☑ 식품안심업소의 요건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할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2. 영업자 혜택

Q12 식품안전업소의 표지판이 변경되었는데, 기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곳은 표지판을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해주는가요?

- ☑ '25.7.8일 이후 신규 지정된 업소(기한연장 포함)는 '26.3월 말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.
- '25년 1월부터 7.8일 전까지 지정받은 업소는 기존 표지판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보내드릴 예정이며,
- '24.12.31일 이전에 지정받은 업소는 '26년 연장평가 이후 재지정시 배부할 예정입니다.

구분	시기	비고
'25.7월 이후 지정업소	'26.3월부터 순차 배송	
'25.1~7월 지정업소	일시 부착용 스티커 배부	
'24.12.31 이전 지정업소	'26년 연장평가 후 재지정시 배부	

Q13 표지판은 재발급하거나 자체 제작이 가능한가요?

- ☑ 업소 정보가 변경되거나 표지판이 훼손된 경우 등 추가적으로 표지판이 필요한 경우 표지판은 재발급 되지 않으며 규정된 도안으로 자체 제작(비용 부담) 가능합니다.
- *현판 제작업체: (가현기획) 044-864-6684, (장원에드택) 053-766-5383, (우진문화) 051-305-1804

Q14 포장 용기 등에 식품안전업소라는 표시를 해도 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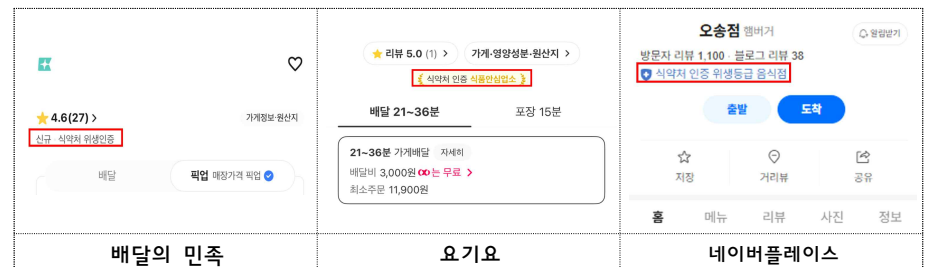
- ☑ 가능합니다. 식품안전업소 유효기간 내에 적합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Q15 식품안전업소 지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?

- ☑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네이버플레이스에 식품안전업소 지정 정보를 노출하고 있으며, 관할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, 청소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> 해썬업체지원시스템 > 식품안전업소관리(음식점) > 식품안전업소 안내 > 시·도별 지정혜택 공고 안내

Q16 배달 앱에 식품안전업소 등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

- ☑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네이버 플레이스 등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안전업소 지정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배달앱에서 식품안전업소 표시가 노출됩니다.
- *떡깨비, 인천e음 등 공공 배달앱도 표출
- 다만, 업소명 불일치 등으로 일부 매장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☎ 043-719-2106, 2112
- *시스템 개편에 따라 26.3.16.~3.25. 지정업소는 3.26.부터 배달앱에 순차 반영됩니다.



배달의 민족

요기요

네이버플레이스

3. 신청·평가

Q17 식품안전업소 지정 신청 방법은?

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기존: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)

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> 해법업체지원시스템 > 식품안전업소관리(음식점) > 식품안전업소 평가신청 > 평가신청

홈페이지 주소 : www.haccp.or.kr/ihrh/

*팩스 혹은 메일로 신청할 경우, 지정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

*신청 수수료 무료

Q18 평가 방법과 평가표 확인 방법은?

☑ 기존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단일 평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, 평가표를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. 평가표는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식품접객업, 간편조리, 집단급식소

*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안전나라 > 위해·예방 > 위생등급제 > 위생등급제 신청서류

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(www.haccp.or.kr/ihrh/) > 식품안전업소관리(음식점) > 식품안전업소 안내 > 자료실

Q19 간편조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나요?

☑ 편의점 형태와 같은 단순 가열·해동이나 간이 매대를 이용한 분할·소분·혼합·단순 가열 등 간편 조리만으로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에 적용합니다.

*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

예) 카페(레스토랑 제외), 편의점, 팝업스토어 등

Q20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은?

☑ 유효기간 만료가 '26.6.15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, 유효기간 만료가 '26.6.15에 해당하는 영업자부터는 위생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 신청되며, 문자로 알림서비스가 시행됩니다.

*유효기간 만료가 '26.6.15 이전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팩스 혹은 메일로 연장신청 필요
(팩스) 043-928-0139 / (메일) jmt@haccp.or.kr

*담당자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, 연락처 변경 필요

Q21 신청 후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?

☑ 신청 후 평가까지 약 한달 반(전국 6개 인증원 지원별 상이)정도 소요되고 있으며, 현장평가 전 방문을 위해 신청한 번호로 연락드립니다.

구분	해당 지역	연락처
서울지원	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	02-860-6900
부산지원	부산 사상구 대동로 290, 엔컴빌딩 2층	051-933-0100
경기지원	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(안양동)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	031-390-5200
대구지원	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(신천동) 대구벤처센터 8층	053-950-1500
광주지원	광주 서구 시청로 81(치평동) 대아빌딩 4층	062-380-0500
대전지원	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(반석동)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	042-251-1169

Q22 평가 전 업소 정보 변경이 가능한가요?

- ☑ (신규 지정) 평가 전 업소명, 대표자, 면적 등 업소 정보가 변경된 경우, 평가 시 방문한 평가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.
(연장) 연장 심사 시 지정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, 지정사항변경 신청서를 방문한 평가자에게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Q23 지정사항변경은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?

- ☑ 지정사항변경은 영업 신고가 지위 승계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나, **업소명 변경, 영업의 형태, 소재지가 변경된** 경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영업의 형태,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Q24 식품안전심업을 지정받기 전에 미리 컨설팅을 받아볼 수도 있나요?

- ☑ 식품안전심업소 지정평가를 준비하거나 지정평가 후 현장 컨설팅이 추가로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*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**에서 **현장 맞춤형 기술지원**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**메일, 팩스, 우편**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술지원 대상이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**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**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> 해법업체지원시스템 > 식품안전심업소관리(음식점) > 기술지원 > 기술지원 신청

4. 집단급식소·위탁급식소

Q25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심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☑ '26.6월부터 *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**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집단급식소의 책임자(영양사, 조리사 등) 신청 가능)

*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> 해법업체지원시스템 > 식품안전심업소관리(음식점) > 식품안전심업소 평가신청 > 평가신청